

#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( 의안번호 제459호 )

## 심사보고서

1997. 12. 23

산업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12. 17

고 성 군 수

나. 회부일자 : 1997. 12. 19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7. 12. 23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### 2. 제안이유

-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용어의 개정과 환경부 예규 제159호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거 과태료 조정

### 3. 주요골자

- 가. 조례 제6조의 제명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를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규정 적용조항을 개정보완.
- 나. 환경부 예규 제159호와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담배꽁초, 뮤지등을 버리는 행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차 5만원, 2차 7만원, 3차 10만원에서 각각 10만원, 15만원, 20만원으로 상향조정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조례 제6조의 제명과 법적용 조항을 개정 보완하고 환경부예규 제159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차이는
- 답 : 생활폐기물은 일반 가정활동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이고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임.
  
- 문 :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1차, 2차, 3차 등 과증처벌의 근거는
- 답 : 과태료 부과대장에 의함.

## 6. 토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1997. 12. 2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